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정 33310-140/6 (전화: 923-7415)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구령장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보존기간		전결	
시행일자	1988.6.		
보조기관	부경장 주관 과장	협조기관	문서통제
기안책임자	신덕현	지침이제기 리사-계간	결재 1988.6.28 구청장 검열 1988.6.29 통제관
경유 수신 참조	기안참조	발신명의	1988.6.29 사무관
제목	남암공고 및 의견청취	제44호	
(제1안) 내부결재			
1. 우미구 관내 정릉동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도보) 신설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이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의 관계이익의 경우 청취코자 합			
너다.			
(제2안)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0호			
도시계획안 공고			
1. 도시계획법 제1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이것은 성북구청에서 정인하의 보안일지

지양도보(기안번호) 100호 원본대조필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정 33310-140/6 (전화: 923-7415)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구령장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보존기간		전결	
시행일자	1988.6.		
보조기관	부경장 주관 과장	협조기관	문서통제
기안책임자	신덕현	지침이제 리사-계관	결재 1988.6.28 구청장
경유 수신 참조	기안참조	발신명의	검열 1988.6.29 통제관
제목	남암공고 및 의견청취	제44호	1988.6.29
(제1안) 내부결재			
1. 우미구 관내 정릉동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도보) 신설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의 관계이익의 경우 청취코자 합			
너다.			
(제2안)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0호			
도시계획안 공고			
1. 도시계획법 제1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이것은 성북구청에서 정인하의 보안일지

지양도보(기안번호) 100호 원본대조필

구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

에서 14일간 공람합니다.

2.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는 공람

기일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 공람기간 : 88. . . - 88. . .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1988. . .

서울특별시

32. 심사 88. 6. 27 36
담당자 시과장

도시계획안

  7/13

구분	등급	구별	특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신설	소보	2	8M	175M	성북구 정릉동 522	정릉동 506-9	
기전	"	3	6M	50M	성북구 정릉동 산하-2	정릉동 506-133	인부차
변경	"	1	10M	50M	"	"	폭원확장

(제 3 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시설계획과장

제목: 같은 건

일 변경과장

1. 우리구 관내 정릉동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별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을 보고
합니다.

첨부 : 1. 공고문 사본 1부
2. 도면 1부

(제 4 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공보관

제목: 일간신문및 사보 게재 요청

1. 우리구 관내 정릉동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내용)
이 관련되어 일간신문 2개지 (오, 석간) 가 사보 게재 요청합니다.

가. 내역 : 일간신문 2단 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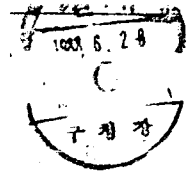
첨부: 공고문 사본 4부

(제 5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같은 건

1. 귀약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건물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일간신문과 같은 일간 신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는 공람기관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도시계획안 공고

1.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이태장소에서 14일간 공람 합니다.

2.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이 택하의 이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일내에 의견을 공람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람기간 : 08. - 09.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1968.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안

구분	종류	규 모	축원 (㎡)	안 면 (㎡)	시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	175	성북구 정릉동 522	정릉동 06-9	
기정		2			성북구 정릉동 522	정릉동 06-9	
기정		1		98			성북구 정릉동

결기

